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 : 도로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 서초동 1747-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

2026년 2월 12일
서 초 구 청 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1)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면적 (㎡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	
기정	-	-	-	4~8	-	-	6,032.3	-	-	-	-	-	•경미한 변경 (감 1.2%)
변경	소로	3	1	4~8	국지 도로	-	5,958.3	서초동 1472-18	서초동148 5-1	일반도로	-	-	

※ 대상지는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의해 고시·정비된 지역으로, 2005년 「현대빌라 I 재건축 주택건설사업」에 의해 기존 도로의 기능이 일부 폐지되었음

2)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3-1	○ 도로 면적 감소 6,032.3㎡ → 5,958.3㎡ (감 : 74㎡, 1.2%)	○ 서초동 1483-18번지 일원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서초동 1482-7번지의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 결정된 도로이나, 당초 시설 결정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 주·정차로 인하여 차량의 진·출입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도로 일부 용도폐지 후 신축계획이 있어, 도시계획시설(도로)의 결정(경미한변경)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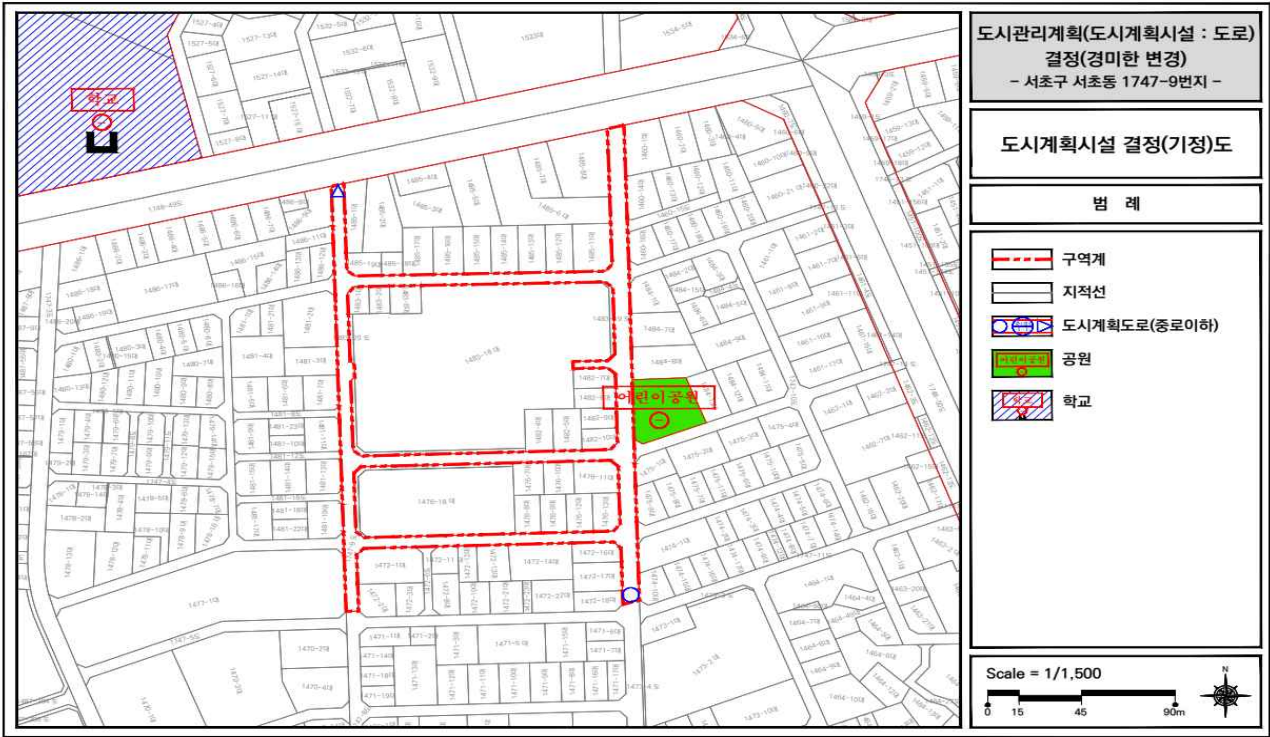
2. 관계도면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지형도면
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3. 열람장소 : 서초구 도시계획과(☎02-2155-6782)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[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]



[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]

